企業會計基準 改正과 法人稅法의 改善方向

1997. 8.

柳 時 權
李 魯 昌
兪 在 權
吳 燁 錄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WTO체제의 出帆과 OECD 加入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압력이 가속화되고 국내기업의 海外資本市場 利用이 점차 활발해지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6년 3월 30일자로 企業會計基準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번의 개정은 國內企業 財務諸表의 국제적 신뢰도와 이해 가능성의 제고, 비교 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國際會計基準의 적극 수용, 규제 중심의 기준에 유연성을 확보, 회계기준의 합리성과 논리성의 확보, 계정과목 단순화를 통한 이해 가능성의 제고를 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法人稅를 중심으로 한 세무회계도 보완·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企業會計는 企業利益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財務的 情報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稅務會計는 課稅所得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所得計算의 統一性과 租稅負擔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國家 財政의 조달을 위한 稅收 確保와 租稅 衡平性의 維持 및 租稅 徵收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 회계의 완전한 일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 하여도 동일한 會計現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企業活動의 經濟的 實質을 稅務行政에서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한 한 양 회계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法人稅法과 國稅基本法인데 이들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제17조에서 損益의 歸屬年度를 정함에 있어서 企業會計基準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세법이 企業會計基準을

과세소득계산의 일반적·총칙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영구적 차이에 대하여는 공백상태로 둔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損益의 歸屬年度의 문제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잘못을 노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기준을 課稅所得計算의 일반적·총칙적 규정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自進申告納付制度下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른 향후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양 회계를 가능한 한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둘째, 현행 법인세법상의 決算調整事項은 기업회계의 발전을 위하여 申告調整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셋째, 현행 법인세법상의 '기업회계 존중'에 관한 규정은 외국의 경우처럼 과세소득산정의 일반적·총칙적 규정으로 설정해야 하며 넷째,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에 관한 國稅基本法의 규정은 課稅所得의 決定뿐만 아니라 신고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 회계의 完全한 一致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지만 가능한 한 양 회계를 접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本 硏究報告書는 本院의 柳時權 博士와 三逸會計法人의 李魯昌, 兪在權, 吳燁錄 公認會計士가 공동 집필하였다. 柳時權 博士는 第Ⅰ章 序論과 第Ⅱ章 企業會計基準의 改正內容, 第Ⅲ章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

係를 집필하였으며, 李魯昌, 兪在權, 吳燁錄 公認會計士는 第Ⅳ章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른 法人稅法의 改正方向을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원고정리를 도와준 本院의 李恩貞, 李除憲, 姜媄婷 硏究員과 崔祉香 硏究助員에게 깊은 감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익명의 논평자 두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8月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Ⅰ. 序　論 …… 9

Ⅱ. 企業會計基準의 改正內容과 稅務會計 …… 11

1. 企業會計基準의 改正背景 …… 11

2. 企業會計基準의 改正方向과 主要內容 …… 15

3. 新・舊企業會計基準과 法人稅法의 對比 …… 21

Ⅲ.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 38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意義 …… 38

2. 美國과 日本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 40

3. 우리나라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 65

Ⅳ.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른 法人稅法의 改正方向 … 77

1. 資產・負債의 評價 關聯事項 …… 77

2. 損益歸屬時期 關聯事項 …… 100

3. 其他事項 …… 107

參考文獻 …… 113

表 目 次

〈表 Ⅱ－1〉 有價證券 關聯 變更 基準 …… 23
〈表 Ⅱ－2〉 在庫資產 關聯 變更 基準 …… 24
〈表 Ⅱ－3〉 投資有價證券 關聯 變更 基準 …… 26
〈表 Ⅱ－4〉 移延資產 關聯 變更 基準 …… 28
〈表 Ⅱ－5〉 先物去來 등의 處理 關聯 變更 基準 …… 29
〈表 Ⅱ－6〉 國庫補助金 등 關聯 變更 基準 …… 31
〈表 Ⅱ－7〉 用役賣出 關聯 變更 基準 …… 32
〈表 Ⅱ－8〉 豫約賣出 關聯 變更 基準 …… 33
〈表 Ⅱ－9〉 長期割賦賣出 關聯 變更 基準 …… 34

Ⅰ. 序 論

정부는 1996년 3월 30일자로 企業會計基準을 대폭 개정하였다. 現行 企業會計基準은 1981년에 제정된 이래 6次의 改正을 거쳤는데 從前의 改正이 주로 國內的 要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데 비하여 이번의 개정작업은 주로 國際的 環境變化에 副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은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會計基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金融 및 資本市場의 開放과 規模 擴大에 따른 會計情報의 적정 공시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4가지 基本方向下에 추진되었다. 첫째, 企業의 國際化, 실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資本自由化 推進에 따른 國內企業 財務諸表의 國際的 信認度 및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간 財務情報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國際會計基準을 적극 수용토록 하였다. 둘째,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제까지의 규제 중심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柔軟性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설명능력 및 예측능력이 있는 회계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會計基準의 論理性 및 合理性을 확보하고 넷째, 財務諸表의 계정과목을 단순화하고 공시사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영정보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필요한 공시내용은 확대하도록 하는 등 財務諸表의 理解 可能性을 提高시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企業會計基準이 대폭 改正됨에 따라 稅務會計도 補完·改善을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國稅基本法 第20條에 "企業會計의 尊重"에 관해 "國稅의 課稅標準을 調査·決定함에 있어서 당해 納稅義務者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企業會計의 基準 또는 慣行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稅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4년 12월에 개정된 法人稅法 第17條「損益의 歸屬時期 및 取得價額의 計算」第3項에 "內國法人이 계속적으로 益金과 損金의 歸屬事業年度와 資産·負債의 取得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基準 또는 慣行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企業會計基準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상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번에 대폭 개정된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稅務會計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本 報告書는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라 이와 關聯된 法人稅法을 어떤 方向으로 개정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第Ⅰ章의 序論에 이어 第Ⅱ章에서는 企業會計基準의 改正內容을 요약하고 稅務會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한다. 第Ⅲ章에서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間에는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日本, 美國 등의 국가들과 比較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第Ⅳ章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자산, 부채의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第Ⅳ章의 각 항목별 검토의견은 이 章을 집필한 公認會計士 個人의 意見이며 公認會計士會의 意見은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本 報告書의 성질상 第Ⅲ章에서 제시한 方向과 第Ⅳ章의 각 항목별 의견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첨언하는 바이다.

Ⅱ. 企業會計基準의 改正內容과 稅務會計

1. 企業會計基準의 改正背景

가. 國際經濟環境과 企業會計基準

企業會計基準 개정 당시의 국제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여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무역거래의 자유화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OECD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市場의 開放壓力이 가속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이용도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자본의 유입과 시장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정보가 국제적 수준에 걸맞도록 개선되어야 했다. 이와 같은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企業會計基準의 國際化 및 先進化가 요구되었다.

나. 國際會計基準의 現況

WTO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세계화 추세와 회계서비스업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은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國際會計基準(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IAS)은 國際會計基準委員會(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 IASC)와 國際證券監督者機構(International Organiz-

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IOSCO)라는 양대 기구에 의하여 그 제정과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IASC는 1973년에 회계전문가 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IASC가 지향하는 목적은 첫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무제표작성시 준거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제정·공표하여 그러한 회계기준이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준수되는 것을 촉진하고 둘째, 재무제표작성과 관련된 규정, 會計基準 및 節次의 改善과 統一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에 두고 있다[1].

지금까지 IASC 이사회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적용할 30개의 IAS를 발행했다. 이 기준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IASC는 민간기구로서 권고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3년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는 國際會計基準을 개선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國際的 資本市場에서 國際會計基準에 따라 통일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국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표준적 회계기준을 선정하고 가능한 한 회계방침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공포된 것이 '財務諸表 比較 可能性'이다.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의 공포 목적은 과거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였던 대체적 회계방침들을 가능한 한 줄이고 특히 표준적인 회계방침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기존의 회계기준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1) 韓國公認會計士會, 『국제회계기준번역서』, 1996, pp. 7~14.

첫째,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각국마다 재무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르면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財務情報의 公示에 대한 요구정도를 相互調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인 합작기업의 경우 회계기준의 차이 때문에 합작계약의 이행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넷째,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회계공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IOSCO는 각국의 증권시장 감독기관들이 1975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1981년에 IASC의 자문그룹으로 가입하면서 자본시장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도록 會計情報의 國際的 統一化를 촉구하였다. IOSCO는 IASC가 국가간의 증권발행 또는 국제적인 증권발생 신청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증권거래소는 외국의 증권발행자에게 IAS에 부합되는 재무제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A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93년 IOSCO는 기업이 해외증권 발행신청이나 상장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는 핵심기준의 목록에 동의하였으며 國際會計基準은 대부분의 중요한 기준을 처리하였다. IOSCO는 국제회계기준 7호인 현금흐름표를 이미 지지하였으며 14개의 현존하는 국제회계기준이 다른 핵심기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가적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IASC에 밝혔다.

농업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는 IOSCO의 핵심기준 리스트의 작업계획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다. 1995년에 IOSCO의 기술위원회는 현재 이사회의 작업계획에 포괄적인 일련의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위

원회는 수용 가능한 포괄적인 핵심기준의 완료는 기술위원회가 전세계의 시장에서 해외증자나 기업공개를 위한 국제회계기준의 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승낙할 것이다.

다. 國際會計 潮流의 變化

國際會計潮流는 종전의 損益計算書의 우위개념에서 貸借對照表 우위개념(新包括主義)으로 전환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우위개념하에서는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에 따라 당기수익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비용은 대차대조표상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效率的 市場假說(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에 따라 경상적 이익을 엄격히 구분하던 회계실무는 퇴색하게 되었다. 오히려 특별손익항목을 엄격히 제한하여 대부분 경상이익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는 經常利益과 特別損益의 임의구분을 통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상대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국제적 추세는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에 따라 일부 비용이 이연되는 실무는 가능한 한 지양되고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점차 인정받게 된 것이다[2].

---

2) 大韓商工會議所, 『企業會計基準 解說』, 1996, p. 11.

2. 企業會計基準의 改正方向과 主要內容

가. 改正方向

기업의 국내외적인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회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金融 및 資本市場의 開放과 規模의 擴大에 따른 회계정보의 적정공시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企業會計基準의 國際化 推進

기업의 국제화, 실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자본자유화 추진에 따른 국내기업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인도 및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간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경제현실에 부합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적극 수용한다.

둘째, 經濟環境變化에 대비한 規定의 新設 및 補完

경제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제까지의 규제 중심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다.

셋째, 會計基準의 論理性 確保 및 理解 可能性 提高

설명능력 및 예치능력이 있는 회계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기준의 논리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다.

넷째, 財務諸表의 理解 可能性 提高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단순화하고 공시사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영정보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필요한 공시내용은 확대한다.

나. 主要內容

韓國經濟의 國際化와 병행하여 金融·資本市場의 自由化, OECD의 가입추진 등에 따른 일련의 經濟環境變化에 맞추어 1996년 3월 30일에

企業會計基準을 國際化 및 先進化하는 방향으로 전문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은 주로 國際會計基準(IAS) 등 선진된 英·美會計 慣行에 접근하려는 개정으로서 회계기준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정이었으며 회계구조의 방향전환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채권자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日本의 保守的會計實務를 기초로 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기본구조 자체가 投資者에게 有用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英·美會計(國際會計基準 제정의 기초가 되었음)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이 우리나라 회계의 보수적 기본구조를 投資者 中心의 情報會計로 전환하려는 구조적 개선, 즉 英·美會計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제정되는 國際會計基準에 접근시키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時價主義會計의 導入

전통적 原價主義會計는 實現된 收益에서 發生한 原價를 대응차감함으로써 이익계산의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으로 신뢰성을 보장받아 처분가능한 성과손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회계환경하에서 1980년대에 개발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일반투자자들은 과거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이익계산의 신뢰성보다는 이익의 형성과정 내지는 창출가능성에 대한 情報, 즉 未來의 成果와 未來의 現金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時價情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회계의 접근방법도 수익비용대응에 의한 손익계산 우위의 수익비용접근법에서 신뢰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未來豫測에 적합한 時價會計에 의한 자산부채접근법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2) 收益認識基準의 擴大

時價主義會計의 채택으로 자연히 수익의 인식범위가 확대되었다. 자산평가에 있어서 취득원가주의회계는 수익인식에서 엄격한 실현주의회계를 동반하여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처분가능한 확실한 이익만을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검증가능한 실제거래에 의한 측정이기 때문에 책임보고회계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時價主義會計는 원가평가의 단점을 제거하여 유용한 시가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時價評價에 의한 미실현이익인 평가이익도 실현가능성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이익으로 계산하는 등 收益의 인식범위를 확대하여 收益을 進行基準 내지는 生産基準으로 미실현보유이득까지도 이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 이익계산의 신뢰성보다는 신뢰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이익의 창출 가능성 · 예측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收益의 認識範圍 내지는 收益去來의 槪念이 확대되고 있다.

改正된 企業會計基準에서 용역매출을 完成基準에서 進行基準으로, 長期豫約賣出을 進行基準으로, 都給工事의 수익인식을 進行基準으로 각각 개정하고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의 時價評價로 계산되는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는 규정 등은 모두 收益認識基準 擴大의 일환이다.

3) 比較可能한 會計基準의 單一化

財務諸表의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적 및 현금의 흐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財務諸表의 目的이다. 이용자가 財務諸表를 통하여 보고기업의 財務狀態, 經營實積 및 재무상태의 변동을 평가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평가

는 당해기업의 실적을 期間別로 비교하거나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比較 可能性은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 會計情報의 國際化 동향은 국가간의 상이한 會計基準을 가급적 통일하여 상호간에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회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선택기준을 제거하여 표준적 처리방법을 단일기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9년 1월에 國際會計基準委員會(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IASC)가 회계기준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개초안 제32호(Exposure Drafts Issued)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E32)을 공표한 후, 1994년에 비교가능성 작업이 마무리되어 10개의 국제회계기준(IAS)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國際會計基準이 이와 같은 比較 可能性原則에 입각한 규정이며 이번 改正은 國際會計基準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가급적 선택규정을 제거하여 계속성 변경의 폐단을 축소하고 비교성을 제고할 수 있는 單一基準으로 통일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3].

改正된 企業會計基準에서 종전의 선택폭을 축소한 예를 들면 有價證券의 評價基準을 原價基準과 低價基準의 선택에서 時價基準으로 單一化하였고, 在庫資産의 評價도 原價와 低價基準에서 強制 低價評價로 單一化하였다. 또한 工事收益의 인식도 完成基準과 進行基準의 選擇에서 강제적인 進行基準으로 單一化하였으며, 장기할부매출도 인도기준과 회수기일도래기준에서 引渡基準으로 單一化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위에서 언급한 國際會計基準의 선택폭을 축소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

3) 崔柄星, 「企業會計基準의 改正背景과 方向」, 『公認會計士』, 1996. 5, p. 21.

4) 利益剩餘金의 分類 및 表示方法의 改善

이번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이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의 보수적 회계에서 투자자 중심의 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자본과 이익잉여금의 범위가 확대·조정되었다.

이는 傳統的인 會計가 확실하게 실현된 수익만을 계상하여 이익을 보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배당으로 인한 사회유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사내유보를 통한 기업의 재무안정을 유도하는 채권자보호의 會計構造에서 보다 公正하고 正確한 利益의 算定으로 투자자의 이해를 보호하려는 英·美會計로 接近하는 것으로서 자본거래의 범위가 주주와의 불입거래로만 한정되었다. 따라서 投資者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익의 분류범위가 자동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자본분류에서도 자본조정항목의 확대로 미실현이익이 장기화되어 배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연처리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이익잉여금의 표시방법에서도 이익처분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하는 개정이 있었다. 즉,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분류방법상의 개정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수익거래로 보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개선되었다.

資本剩餘金으로 분류하던 保險差益도 損益去來로 보아 特別利益으로 分類하여 이익잉여금에 포함시켰다. 또한 종전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던 오류의 수정손익도 당기의 특별손익항목으로 분류하여 당기손익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익잉여금의 대차대조표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이익처분확정 후의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즉, 종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은 결산일 현재 당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는 방법에서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당기결산에 반영하여 당기대차대조표상 미지급배당금을 유동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당기유보처분된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표시되도록 개선하여 대차대조표의 기간별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였다.

法人稅 등의 비용을 發生主義에 따라 기간별로 배분하는 移延法人稅制度의 도입도 손익계산의 기간별 분류방법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 기간배분회계는 종전의 현금주의처리방법에서 발생주의회계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의 범위분류라기보다는 원시적 회계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회계로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유형의 개선사항으로는 특정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수익실현에 대응하여 계상토록 한 것이다. 종전의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은 收益費用 對應의 논리성보다는 비용의 평준화를 위한 기간별 분할부담방법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5) 財務諸表 公示方法의 改善

會計가 利用者의 意思決定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 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재무제표로 공시되어야 한다. 특히 國際會計基準이 投資者 지향적인 정보 유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財務諸表 公示方法의 改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이 개정되었다.

가) 財務諸表樣式의 改善

財務諸表樣式을 標準式과 要約式으로 구분하고 공시재무제표는 보다 간결명료한 要約式으로 작성토록 개정했다. 한편 잉여금명세서와 제조원가명세서 등도 부속명세서로 작성을 하되 공시재무제표 첨부는 기업 임의에 맡겼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금액표시단위도 백만원 등으로 개정하여 그 이상의 금액도 절하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재무제표 공시방법의 개선은 기업의 과도한 情報公示에서 오는 불이익을 기업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貸借對照表 科目分類의 改善

貸借對照表 資産科目을 조정하여 投資와 其他資産을 고정자산분류에

속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其他資産을 投資資産에 통합표시하도록 하며 고정자산분류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으로 중분류토록 개정했다. 또한 유동자산분류도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양분하여 기타 유동자산을 당좌자산에서 통합표시하도록 개정했으며 要約式에서는 유동자산의 중분류마저도 삭제하여 當座資産과 在庫資産과의 구분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세분된 계정과목을 유사과목에 통합표시하도록 하여 계정과목을 축소·단순화하였다.

다) 註釋 公示의 擴大

계정과목을 축소하고 주기사항의 삭제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註釋範圍를 擴大·細分化하였다.

3. 新·舊企業會計基準과 法人稅法의 對比

가. 資産·負債의 評價

1) 有價證券의 評價

有價證券은 保有目的, 市場性 여부 또는 償還期間 등에 따라 短期性有價證券 및 投資有價證券 등으로 區分되며, 그 구분에 따라 평가방법이나 평가손익 등의 계상이 달라지게 된다.

企業會計基準은 유가증권을 當座有價證券, 在庫資産 中 有價證券(商品有價證券), 投資資産 중의 投資有價證券으로 구분하였다.

當座有價證券이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중 단기적인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의미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또한 關係會社가 발행한 주식은 보유목적 등에 상관없이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야 한다.

從前의 企業會計基準에서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이고 또한 당초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유가증권 중 1년 내에 처분할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좌자산 중 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의 대체를 금지한 이유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은 當期損益에 포함되고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資本調整計定에 포함됨에 따라 소유목적 변경 등의 이유로 투자유가증권의 유가증권 대체에 따른 이익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會計基準에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證券業法人 등 유가증권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품유가증권 등은 당해 회사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이러한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投資有價證券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과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중 단기적인 자금운용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 또한 발행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 또는 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法人稅法에서는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단기유가증권과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有價證券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일정기간(단기) 이내에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나타냄으로써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가법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채권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종합과세를 고려하고 그 시가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원가의 산정에서도 개별법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表 Ⅱ－1〉 有價證券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평가손실에 대하여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구 기준 제92조 제1항 및 제92조 제4항).
신 회계기준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는 강제적인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신 기준 제64조 제1항).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하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시가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신 기준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 위의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되지 않은 유가증권, 그 이외의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 이 중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을 의미하고 법인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의 원가법과 저가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96년)	1996년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가법을 일반원칙으로 하여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를 해야 하며 채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原價法과 低價法만을 인정하고 있다.

회계이론적 측면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원가법이나 저가법보다 시가법이 더 우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세수측면에서도 시가법이 원가법이나 저가법과는 달리 이익조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法人稅法에서도 유가증권의 時價法評價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在庫資産의 評價

企業會計基準에서의 在庫資産 評價는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지만 賣出價格還元法은 당해 기업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改正된 企業會計基準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재고자산의 低價法 적용이 強制되었다. 法人稅法 施行令에는 저가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결국 企業會計基準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法人稅法에 저가법에 관련한 사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을 산출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원가법을 계속 사용하는 법인이 많을 것이다. 결국 企業會計基準은 재고자산의 저가법을 함께 인정하는 현행 평가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

〈表 Ⅱ-2〉 在庫資産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 기업회계기준 제93조 제2항).
신 회계기준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을 의무화하고 저가법 적용시 시가는 순실현가치로 한다(신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3항).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한다(신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
법인세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가환원법)과 저가법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적용단위에 대하여 企業會計基準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종목별, 조별 또는 총계별 기준들 중에 일단 적용된 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法人稅法에는 在庫資產에 대한 金融費用의 자본화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改正된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경우에 현행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3) 投資有價證券의 評價

投資有價證券은 利子·配當 또는 賣買差益을 얻거나 회사가 여유자금을 장기간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타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경영활동에 직접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사채, 국·공채를 말한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을 '流動資產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서 投資目的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 또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이 아닌 投資目的으로 保有하는 有價證券 등을 포함하게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한다.

市場性 있는 投資株式은 配當 또는 賣買差益을 목적으로 상당기간 후에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동일하고 관계회사 주식이나 시장성 없는 주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을 100분의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계정에 투자주식평가손익으로 계상한다. 이때 종목별 평가손익은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표시하므로 평가를 종목별로 하더라도 결과는 총계법과 같이 순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평가손익은 주식의 처분시에 투자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하여 처리하므로 투자주

식은 종목별로 평가되어 종목별 평가손익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關係會社가 發行한 株式을 시장성 유무에 불구하고 原價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질지배력에 따른 경영권 가치를 인정하고 동 주식은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가법을 채택한 것이며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다.

〈表 Ⅱ－3〉 投資有價證券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에 대하여 저가법 평가를 규정하였으나 부칙으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가법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신 회계기준	투자유가증권을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투자채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단가의 산정방법은 투자주식의 경우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투자채권의 경우는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등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과 동일하다(신 기준 제66조).
법인세법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은 원가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과 저가법을 적용한다. 둘째,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것이 아닌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의한 원가법만을 적용한다. 셋째, 상기 이외의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만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投資債券의 경우에도 取得原價를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하고 장기보유 목적의 國·公·社債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

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방법도 상이한 점을 비춰볼 때 現行 法人稅法上의 유가증권평가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한 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時價法 評價를 法人稅法上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다. 법인이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한 경우에 동 평가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법인세법상에서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원가법 평가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 과세소득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투자주식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회계상 투자주식장부가액과 세무상 투자주식가액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하다.

한편 企業會計基準에서 적용하는 持分法의 認定問題가 있다. 지분법이란 투자주식의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투자주식을 평가하지만 취득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식의 가액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법인들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더라도 동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므로 당기손익이나 순손실을 보고받은 시점에서 계상한 투자주식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 지분법에서는 이를 수입 배당금으로 수익계상하지 않고 투자주식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상으로 이를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益金算入(유보처분) 稅務調整을 해야 한다.

法人稅法에서는 賣買 또는 短期投資를 目的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 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인정하지 않고 총평균법에 의한 원가법

만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므로 企業會計基準에 의해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1996년 세법 개정에서는 이동평균법 적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법인세법에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를 반영하였다.

4) 移延資産의 評價

移延資産은 현행 지출로 인하여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支出을 資本化한 資産이다. 稅法에서는 創業費, 開業費, 新株發行費, 社債發行費, 社債發行差金, 試驗硏究費를 移延資産으로 규정하고 있다.

〈表 Ⅱ－4〉 移延資産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사채발행비의 경우 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당해 기간 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였다.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였다.
신 회계기준	사채발행비의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였다(신 기준 제70조 제4호). 연구개발비의 경우 관련수익이 실현되는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미상각잔액을 즉시 상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신 기준 제70조 제5호).
법인세법	이연자산은 일정연도 이내에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는 달리 강제상각제도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제2항).

法人稅法에서는 移延資産에 대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균등액 상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연자산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균등히 배분할 수 없으므로 균등액 상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5) 先物去來 등 派生商品의 處理

'先物去來 등'이라 함은 原資材, 通貨, 有價證券, 利子率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 증권별로 내용과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증권이 企業의 經營成果와 財務狀態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위험회피(hedge)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투기(speculation) 목적의 거래를 함께 규정하였다.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상세한 會計處理 및 事例例示 등은 예규를 통해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정기준에 따른 선물거래 관련 예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表 Ⅱ-5〉 先物去來 등의 處理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위험회피목적인 경우 선물환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익은 수익실현 시점까지 이연처리하였다.
신 회계기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도록 하되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회피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 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한다(신 기준 제76조).
법인세법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

일반적으로 先物損益의 인식기준은 결제기준과 시가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결제기준은 선물거래가 만기가 되어 현물수도가 발생하거나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선물손익을 인식하고 선물거래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가격변동분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시가기준은 선물거래의 보유기간중 당해 가격이 변동되면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投機目的 先物去來에서의 선물손익은 발생된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하면 되는 데 비해 헤지목적의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선물거래의 손익과 선물대상물(현물)의 손익을 동일기간에 인식되도록 기간 대응시키는 이른바 헤지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회계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 예규와 사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세법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규정을 서둘러 마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國庫補助金 등의 處理

國庫補助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시설자금 등의 일부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고금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부담금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시설설비를 하는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설비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시설설비의 원가 중 일부를 수요자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말한다.

國庫補助金 또는 工事負擔金 등의 형태로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 등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견해와 자본잉여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國庫補助金이나 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원가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은 계속 자본잉여금으로 남아 있게 되어 收益·費用對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었다. 즉, 주주의 불입액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이익잉여금으로 보고, 이득은 자산의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나누어 인식하도록 하여 收益·費用對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는 현행 세무회계와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表 Ⅱ-6〉 國庫補助金 등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신 회계기준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자산취득시 당해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고 보험차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신 기준 제77조).
법인세법	국고보조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익금산입하고 이들 자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나. 損益歸屬時期 關聯事項

1) 用役賣出의 收益認識

長期用役賣出을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경우에 이는 현행 法人稅法의 해석상 세무회계에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

을 수 있다. 다만, 개정된 企業會計基準은 종전과 달리 용역매출액을 구분하여 명시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에 용역매출에 관한 사항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表 Ⅱ-7〉 用役賣出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용역제공거래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나 장기용역매출인 경우 용역완료기준과 진행기준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신 회계기준	단기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한 때에 수익을 인식하고 장기용역매출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다(신 기준 제42조 제1항).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영업활동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한다(신 기준 제42조 제3항).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내국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2) 長期豫約賣出(都給工事 包含)의 收益 認識

豫約賣出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매입 또는 제조한 후에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도급공사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新 會計基準에서는 종전에 豫約賣出 및 都給工事를 각각 구분하여 규

정하던 것을 장기용역매출의 경우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공사진행기준이 합리적이므로 진행기준이나 완성기준의 선택적 적용을 배제하고 진행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營業活動에 대한 成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장기예약매출이나 장기도급공사에 대해 기업들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인식하는 경우는 현행 법인세법의 해석상 세무회계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42조 제3항에서 진행기준 적용시 공사·제조·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익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세무회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表 Ⅱ-8〉 豫約賣出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장기예약매출이나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와 관련한 수익, 원가 및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한다.
신 회계기준	진행기준이나 완성기준의 선택적 적용을 배제하고 진행기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 공사원가 중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표시한다(신 기준 제42조).
법인세법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3) 長期割賦賣出의 收益認識

割賦賣出이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를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므로 貸損의 위험이 높고 판매 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

〈表 Ⅱ-9〉 長期割賦賣出 關聯 變更 基準

	내 용
구 회계기준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인도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구 기준 제67조 제1항 제2호).
신 회계기준	장기할부매출을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일원화하고 할부매출의 경우 장·단기 구분없이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과 같이 장기할부매출을 인도기준에 따르지 않고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신 기준 제42조 제4항).
법인세법	장기할부판매에 대해 현금회수기준 및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단기할부매출과 마찬가지로 장기할부매출의 경우도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은 사실상 판매로써 완료되므로 인도기준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從前에 引渡基準과 回收期日到來基準을 選擇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引渡基準으로 一元化하고 장기할부매입으로 인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와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대금에 포함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를 基準에서 정하여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 상품 등의 인도와는 별도로 이자상당액은 현재가

치회계를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중소기업(상장법인 등은 제외)의 경우에는 장기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現行 法人稅法上의 규정이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설, 제조 및 용역제공의 경우에도 현금회수기준이나 回收期日到來基準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은 할부판매 개념을 상품이나 제품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기업회계 관행에 비춰볼 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其他 事項

1) 減價償却制度

건물 · 기계장치 · 차량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인위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現行 法人稅法上의 減價償却制度는 任意償却制度이다. 즉,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의상각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이 손익조정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감가상가비는 기간손익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누진세율의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영향을 미쳐 세액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期間損益의 計算은 企業會計는 물론 稅務會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법인일수록 감가상각비를 과

소계상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稅務會計에서도 감가상각비를 強制償却制度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의 資本轉入

企業會計의 경우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企業會計基準 第67條) 다만 주식배당은 그 발행가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企業會計基準 제53조 제1항). 즉 주식배당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상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稅務會計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중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法人稅法 第19條 第2號). 따라서 稅法上 利益剩餘金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가산되며 자본준비금 중에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주식소각익(減資差益)과 기타자본잉여금 즉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자본전입도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된다.

3) 退職給與充當金

退職給與充當金은 회사의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期末決算時點에 설정하는 負債性充當金을 말한다. 임직원의 근속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누적액인 퇴직금을 실제 지급시점에서 일시적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위배되고 기간 손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퇴직금 지급은 장래에 이루어지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은 매회계연도에 각각 비용과 부채로써 계상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稅法에서도 企業會計를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損金算入限度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와 큰 차이가 있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100%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 데 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총급여액기준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하고 있다(法人稅法 施行令 第18條). 여기서 총급여액기준이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의미하며 누적액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세법상 退職給與充當金은 그 누적액을 퇴직급여추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설정금액이 이를 초과하게 되면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체퇴직보험이나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료 및 부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人稅法 施行令 第13條). 그러므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企業은 稅務上 損費處理를 위하여 외부차입금으로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내부적립하는 경우는 稅務會計에서도 이를 全額 損金認定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Ⅲ.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意義

會計는 정보이용자가 合理的 判斷이나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해 주는 과정이며 그 목적은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기타 이용자 들이 예상현금수입의 크기,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企業會計는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또는 미래수익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기업의 기간손익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稅務會計는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세수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유지 및 조세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企業會計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기간손익을 산정하고 세무회계는 법인세법에 의한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확정결산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企業의 經濟的 活動이라는 동일한 회계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각국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충문제 및 상호조정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원인은 바로 兩 會計가 동일한 회계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會計目的과 計算構造를 가지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4].

---

4) 林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1991, p.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양 회계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兩 會計의 完全同一說, 兩 會計의 相互獨立說 및 兩 會計의 相互依存關係說로 대별할 수 있다. 다시 양 회계의 상호의존관계설에는 절대적 의존관계와 상대적 의존관계로 분류된다[5].

企業會計基準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6]. 財務會計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有用하고 適正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은 商法(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會計慣行)이나 稅法(企業會計의 基準 또는 慣行으로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존중) 등에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부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의 계산원리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兩者가 一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兩者는 각각의 算出目的이 다르므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企業會計基準 및 商法이 적용되어 계산된 기업이익은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주주 등에 대하여 배당 가능한 재원을 제시하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기업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課稅所得은 稅負擔의 公平과 産業政策上의 配慮를 가미하여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

5) 尹桂燮,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統一問題에 관한 硏究」, 『月刊租稅』, 1988. 11, pp. 17~23.

6) 企業會計基準 第1條.

法人稅가 기업계산이 아니라 독자적인 계산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확정된 결산에 의한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에 규정된 조정을 가하여 誘導的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세무조정에는 법인의 확정된 결산안에 있어서 미리 所定의 經理를 할 것을 요구하는 決算調整과 경리요건은 없이 확정된 결산에 의한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확정신고서상의 가산·감산의 조정을 하는 申告調整이 있다.

2. 美國과 日本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가. 美國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미국에서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미국회계학회의 法人의 財務報告書의 槪念과 基準에 관한 委員會(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가 발표한 '회계원칙과 과세소득(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이라는 의견서에 잘 나타나 있다[7]. 동 의견서는 과세소득과 기업회계상의 소득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① 規定上의 差異(Differences of Specification)

규정상의 차이는 의회가 입법에 의한 혜택(은혜적 양보)을 주거나 또는 경제적 통제 혹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공제를 제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를 말한다.

---

7) AAA,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Supplementary Statement No. 4, *Accounting Review*, 1952. 8, pp. 427~428.

② 時點의 差異(Differences in Timing)

시점의 차이는 법원에 의한 조세법의 법률적 해석 또는 세무행정의 규제적 결정(행정선례를 만들기 위한)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소득 또는 공제의 인식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課稅所得과 企業會計上의 순소득의 차이는 대부분 양자의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세입법의 목적은 세금을 징수(때로는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식을 제정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企業會計의 純所得決定은 營業實績을 인위적으로 제외하거나 수정함이 없이 발생하는 대로 계측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업이 주로 편의성(convenience) 때문에 소득세법규가 회계실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소득세법도 기업회계의 재무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同 委員會는 다음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이상과 같은 상황을 검토하였다.

① 所得稅課稅標準의 개념정립의 목적과 공시된 재무제표의 순소득의 계측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과연 과세소득이 회계순소득과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필요하고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② 課稅所得과 企業會計上의 純所得(기업이익)의 차이를 인정할 경우 재무회계상의 목적으로 순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의 실무가 용인되어야 할 것인가?

③ 기업회계의 절차 또는 재무보고 방법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것인가?

동 위원회는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① 국회가 입법정책상 세금의 혜택을 주거나 經濟的 또는 社會的 規制를 가하고 세입을 위하여 공제를 거부하는 권한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 행정당국 또는 법원이 납세자가 공시하는 재

무제표작성의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의 적용을 단지 소득 혹은 비용의 인식시점을 조세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② 공표된 재무제표의 목적을 위한 법인의 회계실무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측정과는 관계없이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③ 세법의 지침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에 대한 보고방법이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會計原則과 報告方法의 체계는 광범위한 공공의 필요와 사용에 의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2)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調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하여 계산되는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은 그 계산목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정상 또는 시점상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면 왜 양자의 일치가 바람직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가능한 한 일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첫째,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所得은 課稅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론적으로 정치적 공정의 원칙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기업회계이론은 소득결정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공리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무회계가 불가피하게 차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극히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이론의 확대 사용은 연방소득세를 보다 공평한 세금이 되게 할 것이다.

둘째, 兩 會計를 좀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업이 장부상의 소득은 높게, 課稅所得은 낮게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게 된다. 兩 所得의 차이는 그 성질 자체로 볼 때 소득세법을 준수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하게 만든다. 사회후생적 견지에서 이 추가비용은 양 소

득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兩 會計의 不一致는 企業會計情報의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양 회계 차이는 필연적으로 기업회계 기능과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의 일치가 바람직한 것이다.

美國歲入法 제41조는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일상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회계방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순소득은 납세자의 연회계기간(경우에 따라 회계연도 또는 역년)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데 일상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회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회계원칙이 채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채용한 방법이 소득을 명백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여 소득을 명백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상의 소득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美國議會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세법에 반영했다가 폐지한 예를 보면 美國會計士協會(AIA :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전신)의 연방세제위원회는 1954년에 내국세입법 개정에 앞서 1952년에 "세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58항목에 달하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이 요구로 1954년 8월에 先受所得(prepaid income)의 移延과 費用·充當金에 대한 규정이 세입법 제452조와 제462조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兩 條文은 약 10억달러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는 재무성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연도인 1955년에 소급하여 폐지하게 되었다. 이 양 조문의 신설목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존재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의 차이를 대폭 축소하는 데 있었다. 이 양 조문의 신설과 동시에 폐지는 당시의 GAAP가 發生主義에 의한 費用의 推計에 있어서 납세자가 남용할 수 있는 결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이는 GAAP가 세무회계를 선도하여 양 회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원칙과 실제 관습이 보다 완벽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法人稅의 과세소득의 계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을 기초로 하는 방식과 기업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반드시 기업회계상의 계산법에 구속받지 않는 방식이 있다. 전자와 같이 과세소득의 계산을 기업회계상 확정된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보통 確定決算基準主義(確定決算基準 또는 確定決算主義)라고 한다. 日本의 法人稅法에서는 法人稅 納稅義務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確定한 決算」을 기초로 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고 하여 確定決算基準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日本의 確定決算基準主義는 통설적으로 獨逸 所得稅法上의 「商事貸借對照表의 稅務貸借對照表에 대한 基準性의 原則」(이는 基準性의 原則 또는 基準性原則이라고도 함)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독일의 기준성원칙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세법은 減價償却을 시작으로 많은 분야에 企業會計(재무회계)上의 취급과는 별도로 되어 있어 미국에는 확정결산기준주의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미국세법에도 「課稅所得은 納稅者가 財務會計上 規則的으로 채용하고 있는 會計方法으로 計算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설정되어 있으며(내국세입법 제446조(a)), 또한 세무에 後入先出法(last-in first-out method : LIFO)를 채용할 때에는 企業會計에서도 LIFO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兩者一致」를 구하는 요구는 오늘날도 依然히 규정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업회계상 인정되고 있는 재고자산의 後入先出法에 대하여 세법은 後入先出法을 세무에 채용할 때에는 기업회계상도 後入先出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內國歲入法이 기업회계상의 처리와 一致해야 한다는 要求는 後入先出法 경우뿐만 아니라 定率法에 의한 감가상각의 경우에도 요구되고 있다.

美國 會計學會(AAA)의 위원회는 세법이 납세자의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전제로서 납세자에게 회계장부상에도 같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양자일치의 요구를 부당한 요구라고 하였으나 이 비판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는 후입선출법의 세법상의 사용조건을 위한

것이었다. 즉, 동 위원회는 부속선언문 제4호(1952년)는 세무에서 後入先出法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상도 後入先出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세법의 일치요구를 세법이 기업에 대한 "不當하고 不必要한" 侵害로 단정하고 이를 "입법에 의하여" 일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특정 회계사실에 대한 기업회계에 있어서 복수의 처리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세무에 있어서는 과세소득의 감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절세의 배려가 기업회계상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익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회계사실에 대하여 복수의 회계처리기준이 기업회계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최근에 國際會計基準(IAS)이 그 자유로운 선택을 상당히 제약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1954년 내국세입법은 後入先出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일치요구를 존속시켰으나, 정률법상각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AAA의 비판은 後入先出法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가속상각분야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여기서 회계이론상 "과세소득의 개념은 비용수익대응의 회계목적과는 양립되지 않는 사회적 · 경제적 배려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으로 사기업의 회계방법을 법률화하려는 시도는 회계기준의 가치를 저하시켜 공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하는 일치요구 부정론이 통설화되었다[8].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課稅所得과 企業利益 槪念의 差異라는 점에서 보면, 실은 AAA의 성명서에도 언급된 것과 같이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의 差異는 좁히는 것이 더 公衆에게 利益이 된다"라는 점이다.

---

8) 浦野晴夫, 『確定決算基準會計』, 1994, p. 69.

기업이 과세소득의 계산을 의연히 기업회계에 의존하고 있음은 기업회계가 세법의 일반적 규칙(IRC, 446(a)條)으로서의 지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認定된 企業會計原則(GAAP)이 課稅所得의 計算을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한 純利益을 計算하는 本來의 指針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株主, 債權者, 稅務當局 등에 다른 목적의 이익측정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法令에 規定되어야 하는 약간의 項目 이외에 課稅所得과 企業利益의 差異는 좁혀져야 한다는 것이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나. 日本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日本에서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양 회계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출된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양 회계의 목적의 상이함에서 찾는 질적 차이와 정책적 요인에 의한 양적 차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9].

日本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관계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정법적 측면이 우리나라와 더 관계가 있으므로 일본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양 회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基準의 尊重

가) 立法의 經緯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익금액 및 손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收益·原價·費用·損失額의 계산에 있어서

---

9) 武田隆二, 『法人稅法精說』, 1992, pp. 607~628 참조.

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7년의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추가된 것으로 이 규정으로 집약되기까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조정이나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조정과 세제의 간소화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1) 企業會計審議會의 意見

1952년에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기업회계심의회 중간보고서)에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제상 또는 세무행정상의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기업의 순이익은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세법상의 기업소득의 개념은 기업이익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기본이념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동 심의회의 1966년의 「稅法과 企業會計와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에 인계되었다. 동 의견서에는 과세소득은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 특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法人稅法 課稅標準의 總則的 規定으로서 "납세자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건전한 사회관행에 의하여 기업이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익에 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

(2) 日本租稅硏究協會의 意見

1966년에는 일본조세연구협회가 "기업이익은 건전한 회계관행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도 건전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법령에서 명백히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3) 稅制調査會의 答信

이와 같은 회계학회,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서 세제조사회에서는 「세

제간소화에 관한 제1차 답신(1966.12)」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세법상의 과세소득은 납세자인 기업이 계속하여 적용하는 건전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기본규정을 설정함과 동시에 세법에는 기업회계에 관한 계산원리규정을 제외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세법 독자적인 계산원리를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 規定의 趣旨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세제조사회의 답신제목(세제간소화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는 수익, 원가, 비용, 손실에 관한 계산을 건전한 회계처리에 위임함으로써 세제를 간소화하는 목표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稅制簡素化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法人稅確定申告는 법인의 확정한 결산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며 과세소득의 계산도 기업이익으로부터 유도적으로 산출된다고 하는 구조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세제조사회의 답신에 있어서도 "과세소득은 본래 稅法·通則이라는 일련의 별개의 체제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세법 이전의 개념이나 원리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경제현상을 반영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규제가 가해져야 하는 분야가 존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세법에서 완결적으로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르는 편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경제현상에 대하여 法令이나 通則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法令이나 通則만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 규정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되어 쉽게 이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태에 즉응한 會計慣行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法令에서는 課稅所得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설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건전한 會計處理에 위임하는 것

이 좋다는 생각하에서 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되고 있는 한 이를 인정한다는 기본자세를 명백히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企業會計原則과의 關係

실정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客觀的인 規範性을 가지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이라는 정도의 의미이며 企業會計原則과 같이 명문화된 특정 기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는 사회정세나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업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해석으로 기업회계원칙 자체가 法規範性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다.

이 비판의 기초는 "소득의 존재여부에 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대립에 대한 강제적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과 법원에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는 어디까지나 법률, 정령이나 관습 내지 사회통념이라는 법관념만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결코 회계학이라는 기술적 수단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원칙 그 자체는 확실히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그 원칙에 따르는 것이 관행화되어 사회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면 규범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원칙 그 자체를 법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용인되어 관행화된 것은 결과적으로 규범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처리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企業會計原則은 社會的·經濟的 變化에 따라 수정된

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으로 용인되어, 많은 기업의 회계처리가 이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이 결과적으로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은 세법에 별도(別段)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계원칙에 반하는 법률규정은 위법"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會計處理의 基準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회계원칙은, 기업본래의 활동에 기한 이익 이외의 재산의 증가는 이를 널리 자본으로 보는 입장으로부터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원래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資本剩餘金은 자본 등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무면제가 동법 제22조 제4항(현행법 제5항)의 자본 등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1975. 5. 6. 東京地判)라고 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의 액 및 전항 각 호에 게기하는 액은..."라고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에 정해진 별도로 규정된 것 및 자본 등 거래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收益·原價·費用·損失의 額에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 會計處理基準의 意義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은 企業會計原則 그 자체가 아니며, 상법 제32조 제2항의 "公正한 會計慣行"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없으나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관습으로 현실적으로 계속 적용되어, 회계처리로서 타당시되고 법적 규범성을 갖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회계관행이 법규범성을 갖게 되면 과세관청도 당연히 이에 따라야 되므로 이에 따라서 계산되고 있으면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안되며, 공정

타당한 처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면 경정 등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판단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판례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 確定決算原則과의 關係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는 확정한 결산에 기초하여 법인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商法 및 企業會計의 慣習에 따라서 계산한 기업이익에 세법 고유의 조정을 가하여 유도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유도과정에서는 기업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세법이 용인되는 것은 특별한 조정을 하지 않고 세법 고유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세법계산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 경우 세법이 용인하는 것이라 함은 기업이 행한 회계처리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해석을 포함한 세법규정과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기업회계원칙은 사실인 회계관행을 요약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을 해석하는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 規定新設의 具體的 效果

일본의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신설에 의하여 법령·통달 등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원가차액의 조정에 대하여는 세법이 독자적으로 상세한 취급을 하고 있었으나 세법이 획일적인 기준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간이 취급으로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기본통달이 1969년에 전문이 개정되어 조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건전한 회계관행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정리 또는 삭제되었다.

또한 政令에 있어서도 자가제조 등에 의한 재고자산이나 자기가 건설한 減價償却資産의 取得價額에 대하여는 적정한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원가액과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 계산상의 금액을 취

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원가차액의 조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할부기준을 적용하는 할부판매 등의 정의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규제하여 온 할부횟수, 신용기간 등의 요건을 폐지하여 정형적 약관에 기초한 판매 또는 제공을 그대로 세법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의 평가 또는 상각방법에 대하여도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 반드시 기업실체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배려에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特別한 評價方法이나 特別한 償却方法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신설이 실정법상의 구체적 규정이나 취급·통달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으나 세법 전체에서 본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신설 당초에 기대하였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 今後의 方向

일본의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말하는 "公正한 會計慣行에 따라"라는 규정과 같이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할 것을 언급하였다.

회계실무자로서 고려해야 할 것은 회계관행을 요약하였다고 하는 企業會計原則이나 상법의 계산규정이 너무 간결하여 실제적인 계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법에는 "상당한 상각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상각은 정규 감가상각제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계산되는 액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정규 상각제도 자체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에 대하여도 적정하게 추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세법에서는 내용연수, 성령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수익의 이식기준에 관하여도 發生主義를 基準으로 하여 실현을 계기로 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고자산의 판매, 도급수익, 고정

자산의 양도, 대부금 등의 이자, 사용료, 손해배상금 등의 수익의 계상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 기본통달에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에서는 세금에 관한 법령이나 취급, 통달을 기초로 하여 결산을 행하고 수취배당, 입금불산입 등 기업계산에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申告調整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산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세법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기업회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세법에 의존하여 왔다고 볼 수도 있다.

3) 日本 法人稅의 課稅所得 槪念

가) 課稅所得의 算定과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 基準의 關係

日本의 法人稅法에서는 內國法人에 대하여 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으로 하고 있다(法人稅法 第21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益金額에서 당해연도의 損金額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있어서의 소득개념은 직접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익금액과 손금액과의 차액개념으로서 소득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益金額에 산입하여야 할 收益額 및 損金額의 산입하여야 하는 原價, 費用 및 損失額은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會計處理의 基準에 따라서 계산된다(法人稅法 第22條 第4項). 이 규정은 "稅法에 있어서 企業會計에 관한 計算原理規定은 제외하여 必要最小限度의 稅法 獨自 計算原理를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稅制調査會의 「稅制의 簡素化에 관한 제1차 答信(1966년 12월)」의 제언을 받아들여 1967년 稅法改正에서 도입된 것이다.

法人稅法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 완결적 내지 망라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 규정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法人稅法은 企業會計의 취급과 다른 사항만을 '別途의 規定'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別途의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法人稅法의 課稅所得計算에 수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會計上의 利益을 기초로 과세소득이 정해지는 방식을 법인세법이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 관계자도 크게 환영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법인세법에는 기업이 확정한 결산(주주총회에서 인정된 결산), 즉 기업회계상에 이익의 산정에 대하여 法人稅法이 정하는 所定의 經理를 행할 것을 조건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經理要件'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이 규정이 소위 確定決算主義의 槪念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나) 益金의 槪念

각 사업연도의 所得金額의 계산상 당해연도의 益金額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역무의 제공,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기타 거래로서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것에 관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의 액이다(法人稅法 第22條 第2項).

이와 같이 法人稅法上의 익금액은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純資産(주주지분, 자본이라고도 표현됨)의 增加의 원인이 되는 수익금액 및 기타 경제적 가치의 증가액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거기에는 法人稅法上 '別途의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자산 증가의 원인이 경상적이든 비경상적(임시적)이든 또한 이상적이든 일체 관계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등의 배경이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에 속하는가도 일체 관계가 없다. 순자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본거래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금으로 인식된다.

다) 損金의 槪念

각 사업연도 所得金額의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損金額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에 관한 매출원가, 완성공사원가, 기타 이에 준하는 원가

② ① 이외의 당해 사업연도의 販賣費, 一般管理費, 기타 費用(상각비 이외의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債務가 確定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함).

③ 당해 사업연도의 損失額으로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거래에 관한 것

이와 같이 손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지출액 및 기타 경제적 가치의 감소액을 의미하고 있다.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래 등의 경제적 배경이 경상적인 것인가, 임시·특별한 것(비경상적)인가에 따라서는 구별하지 아니한다. 그 모든 것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이상 일본의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는 과세소득의 산정방식, 익금 및 손금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익금 및 손금의 개념은 국제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 기초한 회계처리와 국제회계기준에 기초를 둔 회계처리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에 관한 법인세법이 그것을 經理要件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別途의 規定

法人稅法上 益金 및 損金은 원칙적으로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한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法人稅法에 있어서는 租稅의 公平負擔 및 經濟政策, 産業政策 등의 租稅政策上의 배려 때문에 企業會計와는 다른 획일적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法人稅法은 企業會計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인세법상의 '別途의 規定'인 것이다.

'별도의 규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企業會計 등에 의존하면서도 課稅의 公平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그 적용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하고, 또한 객관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이다. 즉 자산의 평가, 상각, 충당금, 수익계상의 특수기준들이 여기에 속한다.

② 企業會計와 다른 효과를 실현하고, 또는 기업회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법인세법상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 수입배당금 등의 익금불산입, 법인세, 임원상여 등, 기부금 또는 교제비 등의 손금불산입, 이월결손금, 압축기장, 준비금, 특별공제액의 손금산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별도의 규정'으로 인하여 確定決算上의 利益과 課稅所得金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差額은 稅務申告書에 가산 내지 감산하는 것에 의하여 조정(신고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조정항목 중에는 확정결산상 소정의 경리를 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이들 사항(경리요건사항)에 대해서는 예컨대 기업회계상 필요한 회계처리일지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경리처리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을 세무신고상에서 조정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經理要件事項 중에서 특히 본고와 관계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손금산입, 충당금전입액의 손금산입 등 손금경리를 하지 않으면 손금액으로 산입되지 않는 사항

② 할부기준, 연불기준 및 공사진행기준의 적용 및 금융리스 등 기업이 일정한 경리를 할 것을 요건으로 선택계상이 인정되는 사항

손금경리를 하지 않으면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사항 ①에 관한 규정을 위하여 企業會計上 損金經理할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손금경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한 세무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 친자회사 등 관계회사간의 채권잔고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設定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일정한 경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선택계상이 인정되는 사항 ②에 대하여는 반대로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상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인정되지만 그것을 確定結算書에 益金處理하면 課稅對象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업회계상 익금처리하지 아니한다. 할부판매, 연불조건부판매에 있어서의 회수기일도래주의의 적용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있어서 '경리요건' 규정을 위하여 그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그것이 기업회계상에도 인정되면 기업회계를 왜곡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불건전한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기업회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의 調整

가)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의 關係

① 法人稅法의 課稅標準, 즉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은 이상과 같이 當期의 收益額에서 當期의 原價, 費用 및 損失額을 차감하여 그 差額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法人稅法 第22條).

이와 같은 소득금액의 계산절차는 기업회계의 계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세법상의 계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의 계산에 따라서 산출된 當期純利益(企業利益)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세법 고유의 이유와 필요에 의한 조정을 가하여 誘導的으로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益金額 및 損金額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法人稅法 第22條 第4項(所得計算의 通則)의 규정과 法人稅의 確定申告는 確定한 決算(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은 결산)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는 同法 第74條 第1項(確定申告)의 規定은 이와 같은 양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그러나 企業利益의 計算이 課稅所得의 計算에 先行한다고 하더라도 企業會計가 전적으로 세법을 무시하고 稅法을 떠나서 계산을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즉, 損益의 計算基準이 되는 公正·妥當한 會計處理의 基準에 있어서도 세법해석에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현행 세법에는 각종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이 확정한 결산에 있어서 소정의 경리를 하는 것을 손금산입의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확정한 결산을 전제로 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確定決算基準' 또는 '確定決算原則'이라고 한다.

요컨대 기업이익의 계산과정에 있어서 이미 과세소득의 계산을 상정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하여 계산된 기업이익에 대하여 그 후에 확정신고서상에 소요의 조정을 가하여 최종적인 과세소득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決算段階 및 申告段階를 통하여 세법규정에 기초하여 하는 조정을 「稅務調整」이라고 한다.

나) 稅務調整

전술한 바와 같이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은 그 계산원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 계산목적은 각각 다르다. 前者가 주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後者는 擔稅力에 응하여 공평한 과세를 그 목적으로 하는 등 반드시 동일

한 것은 아니다. 특히 課稅所得의 계산에는 徵稅便宜라든가 租稅政策上의 要請 등이 가미되기 때문에 양자는 반드시 금액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편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양자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稅務調整'이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확정한 결산에 있어서 소정의 經理를 요구하는 決算調整事項 項目과 그 성질상 확정신고서상에 행하는 申告調整事項 項目이 있다.

(1) 決算調整事項

決算調整事項은 확정한 결산에 있어서 稅法이 미리 所定의 經理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事項으로서, 예를 들면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 준비금의 전입, 압축기장, 평가손의 계상 등 소위 내부거래에 속하는 사항 외에 使用人兼務任員賞與와 任員退職給與 등의 특정비용 항목, 할부기준이나 연불기준 등의 경리기준의 선택 등은 언제나 決算調整事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決算調整事項에 속하는 사항은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있어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소득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이 요구하고 있는 경리방법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損金經理를 要件으로 하는 事項[10)]

① 減價償却資産의 償却費 損金算入(法31)

② 移延資産의 償却費의 損金算入(法32)

③ 特別한 事由가 있는 경우 資産의 評價損의 損金算入(法33)

④ 使用人兼任員의 使用人賞與의 損金算入(法35②)

⑤ 任員退職給與의 損金算入(法36)

⑥ 換地處分 등 交換 또는 特定出資의 경우 壓縮記帳의 損金算入(措法65①等)

---

10) 여기서 法은 日本의 法人稅法, 令은 法人稅法 施行令, 措法은 日本의 租稅特別措置法, 그리고 法基通은 日本의 法人稅基本通牒을 말한다.

⑦ 貸損充當金, 退職給與充當金 등 각종 充當金의 損金算入(法52等)

⑧ 少額의 減價償却資産 및 少額의 移延資産의 一時의 損金算入(令133, 134)

⑨ 債券償却時別計定의 損金算入(法基通9-6-4, 9-6-5等)

⑩ 貸損損失(債權切捨에 의한 것을 除外함)의 損金算入(法基通9-6-2)

㉯ 損金經理 또는 利益處分을 要件으로 하는 事項

損金經理뿐만 아니라 利益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한 經理를 한 경우에도 損金算入이 認定되는 事項은 다음과 같으며 利益處分 또는 剩餘金의 處分에 의한 經理를 한 경우에는 申告調整에 의하여 所得으로부터 減算된다.

① 固定資産의 壓縮記帳(換地處分 등 및 交換의 경우의 壓縮記帳을 除外함)의 損金算入(令80, 措法64① 등)

② 國庫補助金 기타 壓縮記帳을 위한 特別計定의 損金算入(令80, 措法64의 2① 등)

③ 特別償却準備金의 損金算入(措法52의3①)

④ 輸入製品國內市場 開拓準備金 기타 각종 準備金의 損金算入(措法54 등)

㉰ 利益處分이 禁止되어 있는 事項

적극적으로 損金經理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경리(이익적립금액을 충당하는 경리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① 使用人賞與의 損金算入(法35③)

② 寄附金의 損金算入(法37①)

㉱ 一定한 經理를 要件으로 하여 選擇計算이 認定되는 事項

法人이 選擇的으로 一定한 經理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計算이 認定되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割賦基準의 適用(法62)

② 延拂基準의 適用(法63)

③ 工事進行基準의 適用(法64)

(2) 申告調整事項

申告調整事項은 確定한 決算에 기초를 둔 企業利益(決算調整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확정신고서상에 가산·감산의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任意的인 것과 必須的인 것이 있다.

㉮ 任意的인 申告調整事項

益金不算入 또는 損金算入의 신고조정을 하는 사항이 기업의 선택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들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진하여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감산하지 않는 한 그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任意的 申告調整事項에 속하는 사항은 모두 경제정책과 조세제도상의 이유 등으로 특별히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등의 감산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성질상 결산상 특별한 경리를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상 감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① 受取配當 등의 益金不算入(法23)

② 資産整理 등에 수반하여 私財提供 등이 있었던 경우에 移越缺損金의 損金算入(法59)

③ 協同組合 등의 事業分量配當金의 損金算入(法61)

④ 技術 等 海外去來所得의 特別控除에 의한 損金算入(措法58)

⑤ 新鑛床探鑛費 및 海外新鑛床探鑛費의 特別控除에 의한 損金算入(措法58의3)

⑥ 農業協同組合 등의 留保所得의 特別控除에 의한 損金算入(措法61)

⑦ 資産讓渡의 경우 特別控除에 의한 損金算入(措法65의2~65의5)

㉯ 必須的인 申告調整事項

이는 稅法上 설치되어 있는 각종의 益金算入, 損金不算入 또는 損金算入 등의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強制하여 이익을 수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그룹에 속한다.

決算利益의 計算이 事實에 기하지 아니한 것 등 公正妥當한 會計處理基準에 따르지 않은 경우(예컨대 賣出計上 漏落이나 經費計上 漏落이 있는 경우)에도 申告調整에 의하여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① 還付金 등 益金不算入(法26)

② 合併差益金 중 利益積立金으로부터 이루어진 부분의 益金不算入(法27)

③ 稅額控除를 선택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外國稅額 益金算入(法28)

④ 過大任員報酬, 任員賞與 및 過大任員退職給與의 損金不算入(法34~36)

⑤ 寄附金의 損金不算入(法37)

⑥ 특정한 諸稅公課 등의 損金不算入(法38, 39)

⑦ 利益處分에 의하여 적립된 壓縮記帳積立金, 特別計定, 各種準備金 등의 損金算入(令80, 措法64①등)

⑧ 稅額控除되는 所得稅額 및 稅額控除를 선택한 경우 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의 損金不算入(法40, 41)

⑨ 靑色申告事業年度의 결손금 및 재해손실금의 損金算入(法57, 58)

⑩ 交際費 등의 損金不算入(措法62)

⑪ 新規取得土地 등에 관계된 負債 등의 損金不算入(措法62의 2)

⑫ 國外關聯者와의 去來에 관련된 課稅의 特例(措法66의 4)

⑬ 國外支配株主 등에 관련된 負債利子의 課稅特例(措法66의 5)

⑭ 特定外國子會社 등의 留保金額의 益金不算入(措法66의 6~66의 9)

이상 열거한 것 외에 壓縮記帳超過額, 充當金의 轉入超過額, 準備金의 積立超過額, 償却超過額 등과 같이 法人이 損金으로 계상한 금액이 稅法上의 限度額을 超過하는 경우 그 超過金額, 株式拂入超過金이나 合併減資益金과 같은 非課稅所得, 기타 事實認識의 差異와 公正·妥當한 會計基準에 따르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하여 當期의 決算에 計上한 損金內容에 대하여 誤謬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5) 國際會計基準의 導入과 法人稅法의 對應

여기서는 日本에 國際會計基準을 도입하는 경우 法人稅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見解는 日本의 中央大學校 敎授 겸 公認會計士가 일본 法人稅法改革에 대한 意見을 제시한 것으로, 國際會計基準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示唆點을 준다[11].

企業의 損益을 정하는 계산개념은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공히 대차대조표 접근방법(balance sheet approach)을 채택하고 있어서 양자간의 基本的인 槪念上의 差異는 없다. 부채개념에 대하여는 法人稅法은 國際會計基準보다 좁게 확정채무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別途의 規定'에 의하여 채무성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負債의 槪念에 대하여도 國際會計基準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法人稅法의 '別途의 規定'에 관한 '經理要件' 규정이 國際會計基準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어 그것이 日本의 企業會計 내지 會計實務를 支配(逆基準性)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일본기업회계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일본의 國際會計基準 導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法人稅法上의 '經理要件' 規定으로 인하여 기업은 企業會計上의 적절한 처리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自社에게 가장 유리한 경리요건에 부합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法人稅法의 규정에 준거하여 처리하면 企業會計上 보통 그것이 적절한 취급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회계상의 해석이 日本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企業會計上 損金處理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別途의 規定'에서 규정하는 한도까지만 손금산입하고 만다. 不良債權이나 不良在庫도

---

11) 白鳥榮一, 「國際會計基準と稅制」, 東京 : 稅務經理協會, 1996. 4.

稅法이 損金算入을 認定하지 아니하므로 企業會計上 損費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會計慣行이 橫行하고 있는 것이 日本에서 현상이다.

稅法上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 모든 것이 좋다는 안이한 사고가 日本社會에 침투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會計思考가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성적 등 財務報告에 대한 信賴性을 損傷하게 되지만 그러한 위험성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認知하고 있지 못하다. 그 위에 이와 같은 사고 때문에 企業의 決算書에 의하여 企業의 實態를 올바르게 공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日本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창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태공시는 옆으로 제쳐둔 채 규칙에 얽매어 形式的인 會計處理만이 추구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日本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건전한 會計慣行이 橫行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의 企業會計의 가치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 시정하여야 할 과제는 그와 같은 회계관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온 기업회계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확정결산에 넣지 않으면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넣지 않도록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日本의 會計制度는 점점 경제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의 기대에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하는 제도가 될 염려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태로는 國際會計基準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없다. 무엇인가 是正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의 기업회계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日本의 企業會計 및 會計實務의 質을 사회의 기대에 충분히 응답하는 수준까지 또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國際會計基準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을 도입할 때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한 가지 현실적인 방책은 法人稅法上의 '經理要件'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 세법의 규정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연결결산을 순화하여 연결결산만을 기업회계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생각에도 一理는 있지만 그것은 次善의 方策이 아닐까 생각된다.

法人稅法이 일정항목을 經理要件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기업의 의사표시를 확정결산으로 공시하는 것에 대한 의의 내지 중요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申告書에 申告調整하는 것도 훌륭한 기업의 의사표시이다. 양자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法人稅法이 조세목적상 損金算入에 一定한 限度를 설정한다든가 益金算入에 一定한 基準을 정하는 등 劃一的인 基準을 設定할 必要性이 있다는 것을 물론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法人稅法上의 經理要件으로 할 필요성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企業會計上의 利益과 課稅所得과의 차는 모두 申告調整에 의하는 방법으로 法人稅法을 改正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法人稅法이 經理要件을 폐지하고 申告調整에 의할 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계기로 日本의 企業會計制度 水準이 진일보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면 日本에 國際會計基準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가. 企業會計의 生成과 發展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發展過程은 서구와는 달리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변화·발전되고 있어서 歷史的 事件展開와 會計基準의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하여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최초로 성문화된 것은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었다. 따라서 1957년까지를 기업회계의 生成期, 1958년부터 1975년까지를 成長期, 1976년부터 현재까지를 調整 및 確立期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12].

---

12) 林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1991, pp. 43~53 참조.

조선 말기부터 일본식민지시대에 걸쳐 서양식 근대 부기기법이 도입되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일반에게 보급되었고 기업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會計業務를 수행할 때 일정한 원칙을 준수함이 없이 慣習的인 수법을 踏襲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1956년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경제 및 경영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企業會計制度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56년 3월 3일자로 증권거래소가 개장됨을 계기로 기업회계제도의 정비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의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생성·발전에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職業會計士制度(計理士制度)의 도입을 들 수 있다. 1958년 이전의 우리나라 企業會計 生成期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일제식민지기간 동안의 日本的인 회계교육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회계원칙의 성문화를 향해 진전을 이룩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企業會計 成長期는 1958년부터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개정된 1976년 이전까지로서, 역시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의 변화, 곧 경제발전에 따른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라든가 일반투자가들의 정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기업회계의 수준향상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1958년의 企業會計原則은 1938년 미국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d : AIA)의 회계원칙보고서와 日本의 기업회계원칙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英國과 獨逸의 제도를 참작한 것이었다.

1958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며 1980년 이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기호황 국면을 맞아 증권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1986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투자자집단의 巨大化와 증권시장의 市場效率性 提高 등에 의한 기업재무정보의 공시확대 등 정보요구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제조치 등 規制強化 要求가 크게 증대되고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기업회계의 제도정비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내적으로 더욱 충실한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企業會計가 일찍이 생성·발전하여 稅務會計를 선도해 온 미국이나

유럽 제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稅務會計가 企業會計를 선도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세무회계가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強行法規的 性格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후부터 실천적 규범으로서 세법을 중심으로 발달한 데 반해 민간부문의 사회적 제도인 企業會計는 기업재무정보에 대한 이용자집단의 빈약, 증권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발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고도화에 따라 대두된 거대한 정보이용자 집단의 企業財務情報 要求의 增大에 의하여 企業會計制度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稅務會計와의 마찰이 논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나.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特徵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發展過程은 경제 및 기업의 발달과 함께 自主的으로 성장 · 확립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도입되고 권장된 제도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정부에 의해 사용이 강요되던 기업회계제도가 기업의 성장발전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되고 정비되어 오면서도 會計基準의 決定過程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이 외국의 경우보다 더욱 뚜렷했다는 점도 우리나라 기업회계 발전과정의 주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특징이 오늘날까지도 법률주의에 입각한 稅法優先主義的 思考가 강하게 남아있는 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13].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의 특징은 첫째, 기업회계에 대한 稅務會計의 주도 둘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會計理論과 技術의 未發達 셋째, 무리

---

13) 林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1991, p. 53.

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一致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기업의 資本調達이 주식시장에서의 直接金融方法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외부감사제도가 강화됨과 동시에 모든 기업의 회계규범인 企業會計基準이 제정된 1980년대 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직 기업회계의 이론과 기법이 獨自的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회계관행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散發的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그후 계속되는 成長爲主의 산업정책이 稅法에 투영됨에 따라 기업회계를 세무회계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무회계에 비하여 企業會計의 중요성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회계학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의 회계사단체의 기업회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踏步狀態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초기 생성기에는 日本의 會計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成熟期에는 미국의 회계를 받아들이는 등 외국의 회계를 모방하여 발전해 왔다. 이 점에서 회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미국, 일본의 기업회계의 발달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오랜동안 商法會計를 유지 · 발전시켜 기업회계기준으로는 손색이 없는 상법상의 정규부기의 원리(GoB)를 발전시켰다.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연구에 의하여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GAAP)으로 발전시켰다. 日本은 獨逸의 상법회계를 전수하여 발전시켜 오다가 彈力的으로 美國의 GAAP에 접목시켜 일반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에 企業會計의 기능이 強化됨에 따라 지금까지 세무회계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던 기업회계가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제기된 것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論爭이었다.

이와 같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조정요구는 주로 실무계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 회계의 차이와 그 조정에 대한 理論的 · 學問的 接近

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양 회계의 일치문제는 양 회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實務的 不便性에 근거한 무리한 일치논리가 1994년 12월 稅法改正에 받아들여짐으로써 세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

法人稅制가 企業會計에 미친 영향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양 회계의 관계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1945년 정부수립부터 1973년까지를 稅務會計 優位期, 1974년부터 1983년까지를 기업회계의 발전에 따른 세무회계와의 相互調整期, 1984년부터 현재까지를 양 회계 공존기로 구분할 수 있다[14].

우리나라에서는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調整問題에 대하여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것이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이나 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법의 개정을 위한 정부나 국회에서 公式的으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양 회계의 조정논의는 학자나 실무자 개인의 수준에서 주장된 것으로 企業會計基準이나 稅法의 제정기관에서는 아직 公式的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학자들간에 양 회계 조정논의를 살펴보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가능한 한 企業會計 쪽으로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申告調整의 擴大, 企業會計基準과 세법규정의 상충시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등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15].

---

14) 林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1991, p. 55.
15) 林采柱,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1991, p. 94.

라. 企業會計 尊重에 關한 稅法規定(法人稅法上의 企業會計 尊重規定)

우리나라의 세법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法人稅法과 國稅基本法이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문제점은 일본의 企業會計 尊重에 관한 法人稅法(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해진다. 일본 법인세법 제22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조문으로 그 제1항은 "內國法人의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은 당해 사업연도의 益金額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損金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금액은 별도(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기타의 거래로서, 자본 등의 거래 이외의 것인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액 및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세입법 제41조도 "순소득(net income)은 納稅者가 帳簿를 記帳하기 위하여 正規的으로 채택한 회계방법(method of accounting)으로 납세자의 회계기간별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日本과 美國의 세법은 一般的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과세소득계산의 일반적이고 총칙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과세소득산정의 일반적이고 총칙적 규정이 아니고 손익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데에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 중에서 양 회계의 영구적 차이에 대하여는 공백상태로 둔 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손익의 歸屬年度의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체계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國稅基本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납세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一般的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라는 한정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自進申告納付制度下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課稅標準算定時에 일반적 원칙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일반적이고 총칙적 규정으로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 과세소득계산의 일반적이고 총칙적 규정으로 '企業會計基準 및 慣行'을 채택하는 경우에 무엇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행법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企業會計基準 등을 열거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2항).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企業會計基準을 일괄하여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보는 경우 이들의 法規範性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좌우되는 폐단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된다. 일본의 통설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원칙 그 자체도 아니고 상법상의 "공정한 회계관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관습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계속 적용되어, 회계처리로서 타당시되고 법규범성을 갖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계관행이 법규범성을 갖게 되면 課稅官廳도 당연히 이에 따라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회계와 비교하여 볼 때 企業會計란 기업회계기준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에서 財務情報를 산출하는 會計一般을 말한다. 즉, 독일에서 상법상의 정규부기의 원칙(GoB)이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이라고 하는 경우의 회계는 다분히 形式的 意味의 기업회계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包括的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16].

① 훌륭한 상관습으로 계속 발전한 적정한 회계실무
② 법률 및 판결(상법, 세법, 판결)
③ 관청의 제반통칙, 민간전문가단체의 권고나 의견
④ 회계문제에 관한 회계이론이나 과학적 논의 등

마. 우리나라 法人稅의 課稅所得 槪念

1) 益金의 槪念

'益金'이라 함은 법인의 純資産을 增加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發生하는 收益을 말한다. 따라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라면 법인세법에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익금에 해당한다.

純資産이라 함은 資産合計에서 負債合計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를 수령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

---

16) 李愚澤, 「企業會計基準의 優先適用과 稅法改正의 問題」, 『季刊 稅務士』, 1996. 8.

며, 부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채가 감소하므로 각각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다른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이 변동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자금차입의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부채가 증가하므로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게 된다.

收益이라 함은 타인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提供하고 획득한 수입금에서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經濟的 利益을 말한다. 법인세법상의 수익은 기업회계상의 수익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자기주식처분 이익과 같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2) 損金의 槪念

'損金'이라 함은 법인의 純資産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損費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는 법인세법상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賣出原價, 賣買費와 一般管理費, 營業外 費用 및 特別損失, 讓渡資産原價 및 其他 純資産減少額이 있다[17].

---

17) 李俊奎, 『法人稅法』, 稅學社, 1995, pp. 91~111 참조.

바. 決算調整과 申告調整

稅務調整은 計算過程의 範圍에 따라 협의의 조정과 광의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조정은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으로부터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광의의 조정은 협의의 조정 이외에 課稅標準의 算定과 納付稅額의 計算過程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法人稅法에서는 특정한 損費에 대하여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손금경리)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決算調整事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申告調整事項은 결산조정사항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익계상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稅務調整計算書에서 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決算調整項目과 申告調整項目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決算調整項目

① 감가상각비

② 퇴직급여충당금

③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④ 법령에 의한 준비금 또는 충당금

⑤ 특별수선충당금

⑥ 증권거래준비금

⑦ 재고자산의 평가손(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⑧ 고정자산의 평가손(천재지변 등의 경우)

⑨ 이연자산의 상각비 중 균등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신고조정항목

①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상각의 손금산입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법인세 주민세환급금의 익금불산입
④ 이월익금
⑤ 국세 ·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자
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⑦ 대표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⑧ 법인세, 주민세 등의 손금불산입
⑨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⑩ 출자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⑪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⑫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미지급금분의 손금불산입 및 자산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⑬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⑭ 기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⑮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등)
⑯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
⑰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⑱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⑲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⑳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계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㉑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㉒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㉓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㉔ 외화채권 ·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과 환율조정계정상각 및 환입차액의 세무조정
㉕ 손금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㉖ 타법인주식, 가지급금,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㉗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익산입 또는 손금산입

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㉙ 이연자산의 균등액에 상당하는 상각액

㉚ 토지초과이득세의 손금불산입

㉛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1996년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

Ⅳ.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른 法人稅法의 改正方向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른 향후 法人稅法 및 同 施行令의 개정의 基本方向은 兩 會計를 가능한 한 接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基本方向下에서 企業會計基準 改正에 따른 稅務會計의 改正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資産・負債의 評價 關聯事項

가. 有價證券의 時價評價

1) 企業會計基準

企業會計上 종전에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低價法으로 평가하고(舊 企業會計基準 제92조 제1항) 이에 따른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有價證券評價充當金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同 基準 제92조 제4항).

그러나 1996년 3월 30일자로 개정된 企業會計基準에서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時價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時價를 貸借對照表 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強制的인 時價評價制度를 도입하였다(企業會計基準 제64조 제1항).

또한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取得原價를 貸借對照表價

額으로 하되 時價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時價를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原價法을 원칙으로 하되 任意的인 時價評價가 가능하도록 하였다(同 基準 제64조 제2항).

2) 法人稅法[18]

稅法上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것이 아닌 유가증권, 그 외의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그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3 제6항).

그런데 이 중에서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企業會計上 投資有價證券으로 분류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이나,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 저가법 가운데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檢討意見

現行 法人稅法에서는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으로 原價法만을 인정하고 있다.

금번 企業會計基準 改正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을 기업회계에서는 時價로 評價하게 되었는바, 稅法上 이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

---

18) 1996년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가법을 일반원칙으로 하여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를 해야 하며 채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로 제기된다.

原價法이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취득 후에도 계속하여 取得原價로 評價하는 方法이다. 유가증권의 원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취득원가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이러한 원가법은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된 교환가격을 사용하므로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物價上昇 또는 經濟環境의 變化 등에 의한 현재의 유가증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결산기에 경영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다시 사들임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손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조정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時價法이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함에 따라 시가로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가의 상승 및 하락을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有價證券의 價値變動과 有價證券의 보유에 대한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상함에 있어서 취득원가보다 유용하며 시가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가법이나 저가법과는 달리 이익조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從前 企業會計基準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하여 저가법 평가를 유예하는 부칙을 둠으로써 결과적으로는 原價法과 低價法을 함께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금번 基準改正時 유가증권에 대해서 時價法 評價를 強制化함으로써 앞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이 유가증권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會計理論的 側面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原價法보다 時價法이 더 우월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재의 여건에서 법인세법에서도 금번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시가법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모든 법인에게 기업회계기준을 강제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법인이 종전처럼 유가증권을 원가법이나 저가법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존의 原價法과 함께 時價法에 의한 有價證券評價도 인정하는 선에서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자산총액 6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의 설정이 목적이므로(企業會計基準 제1조) 외부감사대상 회사 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동 기준 제96조)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이 企業會計基準을 위배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金融·保險業을 영위하는 회사는 당해 업종의 關聯法令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동 기준 제94조) 企業會計基準과 다른 평가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債券을 時價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現行 法人稅法上에서는 原價法과 低價法만 인정되므로 앞으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時價評價하는 법인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 방법으로는 現行 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3 제6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동조 동항 제1호에 時價法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나. 在庫資産의 低價評價

1) 企業會計基準

從前 企業會計基準에서는 在庫資産에 대하여 低價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舊 企業會計基準 제93조 제2항) 이는 기말 재고자산의 가치와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의 低價評價를 義務化하였다(企業會計基準 제65조 제3항).

또한 종전에는 시가를 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純實現可能價額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한 물가조사표가 없는 실정이므로 개정 기준에서는 시가 개념을 純實現可能價額으로 일원화하였다. 純實現可能價額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2) 法人稅法

法人稅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原價法과 低價法이다(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3 제1항).

原價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가환원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同法 施行令 同條 제2항),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원가 산정방법과 일치한다.

한편 同法 施行令 제37조의 4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5 제2항에서 저가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결국 企業會計基準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시가 개념도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 개념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檢討意見

從前 企業會計基準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原價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低落한 경우에 低價法을 任意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개정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低價法 적용을 強制化하였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저가법만이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을 산출하여 低價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법인이 종전처럼 原價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이 모든 법인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원가법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지만 法人稅法에서는 현행대로 원가법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정 企業會計基準에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를 강제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함께 인정하는 현행 평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在庫資産에 대한 金融費用의 資本化

1) 企業會計基準

在庫資産의 취득원가는 구입가액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구입원가 및 제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재고자산 취득에 관련된 차입비용을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상적·반복적으로 구입 또는 생산한 상

품 · 제품 등의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비용은 이를 개별적인 재고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번거롭고 실무상 실익도 없으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작에 많은 자금과 긴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 예를 들면 기계설비, 선박, 분양아파트, 부동산개발 등의 경우 제작 또는 건설중에는 이자비용이 기간비용화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판매시점에 이자지급분을 포함한 수익이 계상되어 기간손익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

2) 法人稅法

法人稅法上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法人稅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法人稅法 제17조 제2항에서는 자산 취득가액 결정의 원칙으로서 "內國法人이 매입 ·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買入價額이나 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企業會計基準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이나 동 기준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유형자산의 평가기준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또한 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에서는 외부매입자산과 자가생산자산 등에 대한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法人稅法 제16조 제1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1994년 12월 22일자 法人稅法 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法人稅法 제17조 제3항), 또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의 해석상 세무회계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 그러나 同法 施行令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7조 이외의 조문에서 기업회계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우선한다고 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법과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높다 하겠다.

따라서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 새로이 도입된 재고자산의 금융비용 자본화 문제는 法人稅法 改正時 이를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檢討意見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수익·비용대응과 기간손익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現行 法人稅法上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필연적으로 세무회계와 괴

리가 발생하게 된다.

企業會計基準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볼 때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차입금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많은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의 경험을 감안한다면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 문제는 세법규정을 가급적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적용대상 재고자산, 자산화 대상금액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기업회계기준 예규나 준칙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번 법인세법 개정시에는 「製造 또는 建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된 金融費用을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입한 경우에는 세무회계상으로도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만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다.

라. 投資有價證券의 評價

1) 企業會計基準

가) 舊 企業會計基準

投資有價證券이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장기간 활용하거나 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사채, 국공채 및 출자금 등을 말한다.

從前 企業會計基準에서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에 대하여 低價法 평가를 규정하였으나, 부칙으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原價法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나) 改正 企業會計基準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을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투자채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단가의 산정방법은 투자주식의 경우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투자채권의 경우에는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등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과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종류별로 각각의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 市場性 있는 投資株式

市場性 있는 投資株式은 배당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상당기간 후에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동일하고 관계회사 주식이나 시장성 없는 주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을 100분의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市場性 있는 投資株式을 時價法으로 評價함에 따라 발생된 평가손익과 투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발생된 평가손익은 자본조정계정에 투자주식평가손익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투자주식의 종목별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서로 상계하여 순액만을 투자주식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투자주식의 평가를 종목별로 하더라도 결과는 총계법과 같이 순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조정계정에 계상된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주식평가손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에 투자주식처분손익에 가감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투자주식평가손익을 순액으로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평가하는 것은 투자주식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목별 평가손익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라) 關係會社가 發行한 株式

關係會社가 발행한 株式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소유나 지배가 목적이며 시장성이 있는 投資株式이나 有價證券의 보유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더라도 時價法보다는 관계회사의 손익을 주식평가에 반영하는 持分法이 論理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분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우며, 또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록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 또는 순자산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더라도 반드시 평가손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改正 基準에서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성 유무에 불구하고 原價法으로 評價하도록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실질지배력에 따른 경영권 가치를 인정하고 동 주식은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가법을 채택한 것이며, 기업이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다.

그러나 원가법을 적용하더라도 관계회사가 장기간의 영업결손이나 부도 등으로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의 현저한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투자주식의 본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취득원가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원가로 조정하는 것이며, 과거에 有價證券이나 投資有價證券의 시가 또는 순자산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低價評價를 의무화하고 회복시 평가증을 하도록 했던 것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

原價法에 따른 취득원가와 새로운 취득원가의 차액은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는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미실현손실로 보는 데 반하여 감액손실은 실현손실로 본다는 점에서 평가손실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의 경우에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회복되더라도 새로운 취득원가를 증액시킬 수 없는데 이는 조정한 가액이 새로운 취득원가이므로 원가법하에서는 평가이익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市場性 없는 投資株式(出資金 포함)

市場性 없는 投資株式은 경영권 소유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순자산가액도 당해주식의 공정가치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改正 基準에서는 시장성 없는 投資株式을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같이 原價法으로 評價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질적 가치하락의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같이 순자산가액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하고 조정전 취득원가와 새로운 취득원가의 차액은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하며,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을 100분의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평가도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바) 投資債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 등을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投資債券이다. 투자채권도 기타 자산과 같이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투자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액면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목적의 국채 · 공채 ·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投資債券은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總平均法, 移動平均法과 함께 個別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有價證券 再分類時의 會計處理

從前 基準에서는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의 회계처리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않았다.

개정 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보유목적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규정하였다.

첫째, 株式은 時價를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한다.

둘째, 債券을 時價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셋째, 債券을 原價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나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액으로 한다.

投資有價證券으로의 재분류시 會計處理方法은 선평가후대체방식으로 기말에 유가증권으로 보아 먼저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그 평가한 가액을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대체하며,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유가증권 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익 처리하여야 한다.

2) 法人稅法

法人稅法上 有價證券의 評價方法은 同法 施行令 제37조의 3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은 原價法(총평균법, 이동평균법)과 低價法을 적용한다.

둘째,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 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것이 아닌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에 의한 原價法만을 적용한다.

셋째, 상기 이외의 유가증권은 原價法 중 總平均法만을 적용한다.

이 중에서 첫번째는 유동자산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이다.

3) 檢討意見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投資有價證券의 평가에 관해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특히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방법도 상이한 점에 비춰볼 때 현행 법인세법상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분류체계를 감안하여 稅法上의 評價規定을 補完한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세법상 투자유가증권 평가문제에 대하여 주제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바, 세무회계에서도 이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이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時價法을 적용하여 評價損益을 계상한 경우에 동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원가법 평가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 課稅所得과 관련한 稅務調整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세법상 시가법 평가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투자주식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회계상 투자주식장부가액과 세무상 투자주식가액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투자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함으로써 결산기말에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分介할 것이다.

(차) 투자유가증권 ××× (대) 투자주식평가이익 ×××
(자본조정계정)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면, 稅務上 投資有價證券價額보다 會計上 投資有價證券價額이 평가이익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소극적 유보)로 처분한다. 또한 회계상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투자주식평가이익은 익금산입하고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결국 상기의 세무조정은 세무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會計上 投資株式價額과 稅務上 投資株式價額의 差異를 조정하여 세무상 자본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주식평가손실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반대로 적용하면 된다.

한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유보금액은 매결산기말 평가손익에 따라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투자유가증권 처분시점에서 직전연도까지 계상

되어 있는 유보금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둘째,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이들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세무회계상으로도 이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持分法이란 투자주식의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투자주식을 평가하지만 취득 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식의 가액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持分法은 投資資産의 評價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피투자회사가 순이익을 보고할 때마다 투자회사는 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자기지분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순손실을 보고할 때마다 순손실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投資株式의 帳簿價額을 減少시킨다.

從前 企業會計基準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지분법을 인정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비연결종속회사 및 지분율 20%~50% 법인에 대한 투자계정을 지분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으로 법인들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더라도 동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되므로 당기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투자회사로부터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보고받은 시점에서 계상한 투자주식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지분법에서는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수익계상하지 않고 투자주식의 감소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상으로는 이를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익금산입(유보처분)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에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회계상 투자주식가액과 세무상 투자주식가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한바, 구체

적인 세무조정방법은 전술한 시가법평가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結論的으로 法人稅法에서 지분법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고 비록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 지분법 적용을 허용했지만 당분간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원가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지분법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적다고 판단된다.

셋째, 法人稅法에서는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 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인정하지 않고 총평균법에 의한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 모든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이러한 방침을 고수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즉, 現行 規定上으로는 투자주식에 대해 기업회계에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총평균법 적용시 평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식의 처분시점에서 주식처분손익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가 빈번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마. 強制買入 有價證券과 有形資産 등의 取得原價

1) 企業會計基準

有形資産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액면가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시가가 취득원가인 액면가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종전 기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改正 基準에서는 이들 國·公債를 企業會計基準 제73조(자산·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토록 하였다(企業會計基準 제62조 제3항).

2) 法人稅法

法人稅法에서는 강제매입한 국·공채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檢討意見

從前의 企業會計基準에서는 강제매입한 국·공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국·공채 매입가액(대부분 액면가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하는 회계처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무회계에서도 이러한 기업회계의 관행을 묵인해 왔으나 會計理論上으로는 취득시점에서 이자율 차이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企業會計基準 改正에서는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상의 처리방법은 명료해졌다.

그러나, 현행 法人稅法 體系를 살펴볼 때 기업들이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강제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평가액의 차이를 관련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즉, 본 사안은 企業會計基準 改正으로 새롭게 명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는 한 종전의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존중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의 내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세무회계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회계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개정기준에서 명시된 본 사안은 종전의 회계처리 관행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므로 稅務會計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가 발생하여 관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동안 稅務調整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바. 移延資産의 評價

1) 企業會計基準

移延資産은 현재의 지출로 인하여 미래에 기대되는 經濟的 效益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지출을 자본화한 자산이다. 지출비용을 차년도 이후로 이연하는 이유는 그 지출의 효과 모두가 지출한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收益創出 活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사채발행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즉 사채발행비의 경우 종전 기준에서는 사채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기준에서는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였다(기업회계기준 제70조 제4호). 또한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특정과제와 관련한 임시거액의 연구개발비를 관련수익과 대응시키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정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액의 연구개발비는 관련수익이 실현되는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즉시 상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기업회계기준 제70조 제5호).

2) 法人稅法

稅務上 移延資産의 評價에 관하여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38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연자산의 상각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는 달리 강제상각제도이며 月割償却을 하지 않는다.

또한 稅務會計上 移延資産의 상각은 企業會計와는 달리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企業會計基準上 이연자산은 「×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서는 그 상각기간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상각기간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균등하게 상각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이연자산의 상각액이 매기간에 균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어 균등액에서 전액까지 임의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매사업연도에 상각액이 균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檢討意見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 사채발행비와 연구개발비의 평가방법이 일부 변경되었는바, 가급적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법인세법에서도 이들 개정내용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개발의 높은 실패율과 연구개발비의 미래 효익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硏究開發費의 當期費用化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원동력인 硏究開發活動이 委縮되어 國家經濟發展에 惡影響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는 관련수익 획득시점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세법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는 이연자산에 대하여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기업회계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문구를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사. 先物去來 등의 處理

1) 企業會計基準

「선물거래 등」이라 함은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派生金融商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 증권별로 내용과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증권이 企業의 經營成果와 財務狀態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위험회피(hedge)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투기(speculation)목적의 거래를 함께 규정하였다. 개정 기준에서는 金融去來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하도록 하되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회피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상세한 會計處理 및 事例例示 등은 예규를 통해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정 기준에 따른 선물거래 관련예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 法人稅法

선물거래 등에 대한 세법규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를 규정한 法人稅法 基本通則 2-11-14-17이 거의 유일한 선물관련 세법규정이다.

상기 통칙에서는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물환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바, 만약 이를 선물거래에 유추적용한다면 先物去來의 損益을 決濟基準에 따라 측정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3) 檢討意見

일반적으로 先物損益의 認識基準은 決濟基準과 時價基準으로 나뉘어진다.

결제기준은 선물거래가 만기가 되어 현물수도가 발생하거나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선물손익을 인식하고 선물거래의 보유기간중에 발생하는 가격변동분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서 시가기준은 선물거래의 보유기간중 당해 가격이 변동되면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목적 선물거래에서의 선물손익은 발생된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하면 되는 데 비하여, 헤지목적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선물거래의 손익과 선물대상물(현물)의 손익을 동일기간에 인식되도록 기간대응시키는 이른바 헤지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의 會計理論에 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企業會計基準 예규와 사례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세법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규정을 서둘러 마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國庫補助金 등의 處理

1) 企業會計基準

국고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상 이유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 등의 일부를 국고금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부담금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공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시설설비를 하는 경우에 실수요자 등에게 설비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施設設備의 原價 중 일부를 수요자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 등의 형태로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 등을 利益剩餘金으로 보는 견해와 資本剩餘金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한 것인지에 따라 企業의 當期純利益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종전에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원가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계속 자본잉여금으로 남아 있어 收益·費用의 對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법인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2) 法人稅法

稅法上 國庫補助金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익금산입하고, 이들 자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3) 檢討意見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 資本的 支出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도록 한 것은 결국 現行 稅務會計와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바뀐 것이므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2. 損益歸屬時期 關聯事項

가. 用役賣出의 收益認識

1) 企業會計基準

用役提供去來의 경우 동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역제공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短期用役의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수익을 인식하고, 長期用役賣出의 경우에는 進行基準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였다(기업회계기준 제42조 제1항).

즉,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용역매출인 경우 용역완료기준과 진행기준에서 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예약매출과 동일하게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用役提供과 관련한 收益, 原價 또는 進行率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營業活動 內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기업회계기준 제42조 제3항).

2) 法人稅法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企業會計上의 用役賣出이 제1항의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의 내용에 비춰볼 때 同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7호에 포함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法人稅法 제17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施行令 제36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내국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改正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用役賣出에 대한 收益認識을 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3) 檢討意見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용역매출을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할 경우 이는 現行 法人稅法의 해석상 세무회계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改正 企業會計基準에서 종전 기준과 달리 용역매출액을 구분하여 명시한 점을 감안하여 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7호에 용역매출에 관한 사항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長期豫約賣出(都給工事 포함)의 收益認識

1) 企業會計基準

예약매출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매입 또는 제조한 후에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도급공사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거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從前 企業會計基準에서는 豫約賣出과 都給工事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예약매출이란 용어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예약매출이나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와 관련한 수익, 원가 및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引渡基準 또는 工事完成基準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기예약매출(장기도급공사 포함)의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공사진행기준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進行基準이나 完成基準의 선택적 적용을 배제하고 진행기준

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 공사원가 중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營業活動에 대한 成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2) 法人稅法

改正 企業會計基準의 예약매출이란 용어는 종전 기준상의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는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收益과 費用을 당해 사업연도의 益金과 損金에 각각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기 규정은 장기예약매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1994년 12월 22일의 法人稅法 改正으로 인해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法人稅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과 同法 施行令 제3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된 완성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무회계상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3) 檢討意見

장기예약매출이나 장기도급공사에 대해 기업들이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인식하는 경우 現行 法人稅法의 해석상 稅務會計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改正 企業會計基準 제42조 제3항에서 진행기준 적용시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익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稅務會計上으로도 이러한 會計處理가 認定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2 제1항 제3호 및 同法 施行規則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법인이 기장·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 대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7호의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 企業會計基準 제42조 제3항의 규정과 法人稅法 施行規則 제15조의 2 제1항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규정을 문구대로 해석하는 경우 장기도급공사에 대해 기업들이 改正 企業會計基準 제42조 제3항의 규정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회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現行 稅法(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2 제1항 제3호 및 同法 施行規則 제15조의 2 제1항)에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배제되고 同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야 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2 제1항 제3호와 同法 施行規則 제15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개정 企業會計基準 제42조 제3항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現行 法人稅法 施行令 제37조의 2 제1항 제7호의 「長期都給契約」이 장기예약매출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종전의 예약매출과 도급공사를 예약매출이란 용어로 통합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인세법에서도 이들 용어를 가급적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長期割賦賣出의 收益認識

1) 企業會計基準

割賦販賣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를 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손의 위험이 높고 판매 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인도기준과 회수기일도래기준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舊 企業會計基準 제67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개정 기준에서는 장기할부매출도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收益認識基準을 一元化함으로써 할부매출의 경우 장·단기 구분없이 인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만,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과 같이 장기할부매출

을 인도기준에 따르지 않고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引渡基準과 回收期日 到來基準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할부판매의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회수하므로 賣價의 일부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개정 기준에서는 同 基準 제73조의 현재가치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企業會計基準 제42조 제4항).

2) 法人稅法

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5호에서는「長期割賦條件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販賣 또는 讓渡金額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益金과 損金에 각각 算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할부판매에 대해 현금회수기준 및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同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現金回收基準이나 回收期日 到來基準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세법규정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모든 법인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檢討意見

現行 法人稅法上 장기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5호)은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세법규정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現行 稅法 規定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할부판매의 수익인식과 현재가치회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법인들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방식대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現行 法人稅法의 規定을 서둘러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경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法人稅法 施行令 제36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설·제조 및 용역제공의 경우에도 現金回收基準이나 回收期日到來基準을 適用하도록 명시한 것은 할부판매 개념을 상품이나 제품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기업회계관행에 비춰볼 때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其他事項

가. 減價償却會計

1) 任意償却制度

건물·기계장치·차량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現行 稅法上 減價償却制度는 任意償却制度이다.

즉, 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減價償却費를 損

金으로 計上한 경우」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法人稅法 施行令 제55조의 2에서 「減價償却의 擬制」 規定을 두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檢討意見

任意償却制度는 財務諸表의 信賴性을 低下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이 손익조정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감가상각비는 기간손익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누진세율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영향을 미쳐 세액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기간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에서는 물론 세무회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企業會計에서는 耐用年數에 걸친 減價償却費 計上이 강제되고 있는데 비하여 稅務會計에서는 任意償却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자동적으로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비외감법대상법인(자산총액 60억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에 따라 결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바,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법인일수록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법인이 만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회계에서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강제상각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의 資本轉入

1)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無償株

기업회계의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며(企業會計基準 제67조), 다만 주식배당은 그 발행가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企業會計基準 제53조 제1항).

즉, 주식배당을 제외하고는 企業會計上 剩餘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비해서 세무회계에서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중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法人稅法 제19조 제2호).

따라서 세법상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가산되며, 자본준비금 중에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기주식소각익(감자차익)과 기타자본잉여금, 즉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자본전입도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된다.

2) 檢討意見

企業會計에서 剩餘金의 資本轉入을 資産增加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들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받더라도 보유한 전체주식의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단지 보유주식수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現行 稅法上으로는 기업들이 무상주를 수령할 때마다 그 무상주의 발생원천을 일일이 구분하여야 하며, 만약 그것이 주식발행회사의 기타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인 경우에는 세무조정

을 위하여 취득원가 및 처분손익조정과 관련한 별도의 비망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취득과 처분이 빈번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現行 法人稅法 제19조 제2호를 삭제하여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따라 수령하는 주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는 기업회계의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 退職給與充當金(團退 포함)

1) 企業會計基準

退職給與充當金은 회사의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말 결산시점에 설정하는 부채성충당금을 말한다.

임직원의 근속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누적액인 퇴직금을 실제 지급시점에서 일시적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위배되고 기간손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退職金支給은 장래에 이루어지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금의 증가분은 매회계연도에 각각 費用과 負債로 計上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2) 法人稅法

세법에서도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損金算入限度에 있어

서는 기업회계와 큰 차이가 있다. 즉, 기업회계상으로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100%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 데 비해서 법인세법상으로는 총급여액기준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하고 있다(法人稅法 施行令 제18조). 여기서 總給與額基準이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말하며, 累積額基準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추계금액의 100분의 50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누적액을 퇴직급여추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설정금액이 이를 초과하게 되면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체퇴직보험이나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료 및 부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人稅法 施行令 제13조).

3) 檢討意見

現行 稅法上 退職給與充當金은 強制積立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任意積立制度를 適用하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분의 50에 불과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내부유보방식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 설정한 경우 필연적으로 세무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세무회계상 손금부인된 금액만큼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 등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을 100% 內部留保方式으로 적립하는 기업과의 衡平性을 저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더구나, 자금사정도 넉넉치 못한 기업이 세무상 손비처리를 위해서 외부차입금으로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는 사례도 빈번한 점을 감안한

다면, 세법에서 퇴직금을 사외에 유보시키도록 권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임직원의 退職給與推計額을 退職給與充當金으로 내부적립하는 경우 세무회계에서도 이를 전액 손금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세무회계에서도 강제적립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三逸會計法人,『計定科目別 會計와 稅務解說』, 1996.

大韓商工會議所,『企業會計基準 解說』, 1996.

尹桂燮,「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統一問題에 관한 硏究」,『月刊租稅』, 1988년 11월호.

李愚澤,「企業會計基準의 優先適用과 稅法規定의 問題」,『季刊 稅務士』, Vol. 14-2, No. 75, 1996. 여름.

李政祐,『要點解說 企業會計基準』, 서울 : 商經社, 1994.

李鍾奎 外,『法人稅法 解說』, 서울 : 中央經濟社, 1995.

林采柱,「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相互關係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趙達英 · 金善昊,『'96 法人決算申告實務』, 서울 : 租稅通覽社, 1995.

崔炳星,「企業會計基準의 改正背景과 方向」,『公認會計士』, 통권 36호, 1996. 5.

吉牟田勳,『新版 法人稅法詳說』, 東京 : 中央經濟社, 1990.

武田隆二,『法人稅法精說』, 東京 : 森山書店, 1992.

白鳥榮一,「國際會計基準と稅制」,『稅經通信』, Vol. 51, No. 4, 通卷 709號, 東京 : 稅務經理協會, 1996. 4.

山本守之,『體系法人稅法』, 東京 : 稅務經理協會, 1992.

浦野晴夫,『確定決算基準會計』, 東京 : 稅務經理協會, 1994.

AAA,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Supplementary Statement No. 4, *Accounting Review*, 1952. 8.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ommittee of Accounting Principles for Tax Purposes, "Diver-

gences between Rules of Tax Accounting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54.

Maloney, David M. and Robert H. Sanborn,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Caused by the Tax Reform Act of 1986," *Accounting Horizon*, 1988.

OEC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Income Tax Accounting*, Paris : OECD, 1987.

Sommerfeld, Ray M., et al., *An Introduction to Taxation*, 1988 Edition, San Diego,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1987.

Summa, Don J. and Leonard Goodman,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Conformity further Aggregated by the TRA," *The Tax Adviser*, April 1987.

〈국문요약〉

企業會計基準 改正과 法人稅法의 改善方向

柳 時 權 外

1996년도 企業會計基準 改正의 기본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물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資本自由化 推進에 따른 國內企業 財務諸表의 國際的 信賴度 및 理解 可能性을 제고하고 국제간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國際會計基準을 적극 수용토록 하였다.

둘째,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規制 中心의 硬直性에서 벗어나 柔軟性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설명능력 및 예측능력이 있는 회계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會計基準의 論理性 및 合理性을 확보하였다.

넷째, 財務諸表의 計定科目을 單純化하고 공시사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經營情報의 海外流出을 防止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1996년도 企業會計基準 改正의 주요내용은 ① 時價主義會計의 導入 ② 收益認識基準의 擴大 ③ 비교가능한 會計基準의 單一化 ④ 利益剩餘金의 分類 및 表示方法의 改善 ⑤ 財務諸表 公示方法의 改善으로 요약할 수 있다.

企業會計基準의 改正에 따른 향후 法人稅法 및 同 施行令 改正의 基本方向은 첫째, 兩 會計를 가능한 한 接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둘째, 現行 決算調整事項은 신고조정으로 전환할 것 셋째,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에 관한 現行法의 規定은 論理的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法의 課稅所得의 計算 條文에 직접적으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基準에 의하여 計算한다"라는 規定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稅法에는 企業會計에 대한 예외규정만을 두어 稅法을 簡素化해야 될 것이다.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Improvement of the Corporative Income Tax Law

Yu, Shi-Kwon et al.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the last three decades, tax accounting has influenced formulating financial accounting theories and practices in Korea.

As of March 30, 1996. Government revise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6th time since its enactment in 1981. The revision aimed at internationalizing the Standards as compared to previous revisions were due to domestic factors. The purposes of the revi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 promote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o make the Standards more flexible; to promote logic and reasonableness of the Standards; to simplify entries of the statement.

There have been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 accounting due mainly to differences in specification and differences in timing in Korea. The major reasons of diversion are attributable to many artificial exclusions or modifications under tax laws. Despite these differences in purposes, business has sometimes allowed its accounting practices to be influenced largely for convenience by Corporate Income Tax provis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first, conformity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should be achieved as far as possible. Secondly, items subject to reconciliation before settlement of accounts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should be converted to tax reconciliation after settlement of accounts. Thirdly, the provisions related to two accounting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revised to enable taxpayers calculate taxable income using GAAP for tax return if the tax law has no specific provisions that excludes application of GAAP.